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노루홀딩스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NOROO HOLDINGS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4.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5. 자회사 등에 대한 구매대행업
6.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7.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8.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9.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10.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11. 부동산 개발업
12. 부동산 임대 및 창고업
13. 건축 및 도장업
14. 도료,합성수지,안료,잉크의 제조 및 판매업
15. 인쇄재료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16. 각판식 인쇄업
17.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18. 위 각호에 관련된 투자 및 부대사업

제3조 (본점과 지점, 출장소의 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양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국내외 각지에 지점과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6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6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1.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범위 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2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단,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

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삭제(2016.3.25)

제6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1.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범위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6조의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1.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범위 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 전환 또는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 ㉤ 적대적M&A가 우려되는 경우
 - ㉥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사항

4.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6조의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④)

1. 이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이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㉓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 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 ㉕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㉖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㉕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㉖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의6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⑤)

1. 이 회사가 발행할 5종 종류주식은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 제6조의4 및 제6조의5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 내로 한다.

2. 기타 종류주식의 상환 및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6조의4 및제6조의5에 의거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의7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⑥)

1. 이 회사가 발행할 6종 종류주식은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 제6조의 3 및 제6조의5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2. 기타 종류주식의 상환 및 전환과 관련 한 세부사항은 제6조의3 및 제6조의5에 의거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7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㉔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㉕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㉖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㉗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㉘ 삭제(2015.3.20)

㉙ 삭제(2015.3.20)

㉚ 이 회사가 (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ii)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이 회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㉛ 삭제(2009.3.20)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회사는 제1항 ㉔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삭제(2005.3.18)

제7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 삭제(2009.3.20)
 - ㉡ 삭제(2009.3.20)
 - ㉢ 삭제(2009.3.20)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 ㉡ 당해 주식의 권면액
 - ㉢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삭 제)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4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 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8조 삭제(2000.3.15)

제9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삭 제)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2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5.3.18)

㉠ 전환사채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제1항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 제7조 제1항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삭제(2015.3.20)

㉣ 삭제(2009.3.20)

㉤ 삭제(2009.3.20)

2. 제1항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 총액 중 육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사백억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6.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3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단서삭제 2005.3.18)

- ㉑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제1항 ㉔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 ㉒ 제7조 제1항 ㉑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㉓ 삭제(2015.3.20)

㉔ 삭제(2009.3.20)

㉞ 삭제(2009.3.20)

2. 제1항 ㉞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총액중 삼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백억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삭 제)

제13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9조,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할 때에 이사회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2.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3.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5.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6. 삭제(2009.3.20)

제16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부사장인 이사, 전무이사의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매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그러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1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제한)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2.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3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7.1.1 시행)

제24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의결사항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5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7인**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회사의 감사는 상근감사 1인으로 한다.**
2.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 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026.7.23 시행)

제26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 시에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
3.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으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1.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독립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5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6.7.23 시행)

3. 삭제(2005.3.18)

제29조 (대표이사) 이사회의 결의로서 1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각기 회사를 대표한다.

제30조 (업무집행)

1.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 및 부회장, 사장을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사장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무일체를 통괄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3.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 사장을 보좌하고 각기 담당업무를 집행하며 회장, 부회장, 사장 유고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026.7.23 시행)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의장)

1.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31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2. 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이사회 결의방법)

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36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상담역과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계산

제39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 (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 당 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1조의2 (주식의 소각)

1.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하여야 한다)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4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42조의2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이익준비금
-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7장 보칙

제43조 (세칙내규) 본 회사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 (규정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2항,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2조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2 개정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에 시행한다.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예)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 ㉠ 이 정관 시행 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이 정관 시행 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 청구로 발행되는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관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 변경규정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에 관한 적용예)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부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1996년10월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률 + 1% 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 변경규정은 2026년 제8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본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부칙 제1조도 불구하고, 제25조, 제28조, 제30조의 3 제2항의 독립이사 명칭에 관한 내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25조, 제28조, 제30조의 3의 독립이사는 「상법(법률 제20991호)」 제542조의 8에 따른 사외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정 관 변 경

제	정	1952.	8. 26
변	경	1960.	1. 10
		1960.	10. 16
		1963.	3. 27
		1966.	5. 30
		1970.	3. 23
		1970.	9. 21
		1973.	5. 4
		1973.	5. 12
		1973.	7. 13
		1974.	5. 29
		1975.	5. 20
		1976.	2. 14
		1977.	2. 26

1978. 2. 25
1980. 2. 27
1984. 2. 27
1985. 2. 27
1986. 2. 27
1987. 2. 27
1988. 2. 27
1989. 2. 28
1992. 2. 28
1995. 2. 28
1996. 2. 29
1997. 2. 28
1998. 2. 27
1999. 2. 27
2000. 3. 15
2000. 10. 20
2001. 3. 16
2002. 2. 28
2003. 2. 28
2005. 3. 18
2006. 4. 28
2009. 3. 20
2010. 3. 19
2012. 3. 23
2013. 3. 22

2015. 3. 20

2016. 3. 25

2019. 3. 21

2021. 3. 26

2026. 3. 20